

2023년도 제2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1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2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140건(제2023-163717호~제2023-16582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63717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3718호~163733호(순번 2번~17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63734호~163758호(순번 18번~42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개인 감상, 촬영 영상 및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63759호~163769호(순번 43번~53번)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07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31회 저작권보호심의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2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선하 변호사: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
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박선하 변호사: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14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함. 다수의 비밀댓글이 게시되어 있어, 댓글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선하 변호사: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시 '삭제되었거나 다른 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노출되고 있음.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

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됨.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므로, 현장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 또한 복제에 해당하고 이를 허락없이 하였을 경우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함. 현장공연의 녹음·녹화 파일, 그리고 권리자에 의해 영상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 OST의 복제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나,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순번 1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박선하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 내지 1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0건임.
 (순번 5번 및 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 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으며,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선하 변호사: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앞선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2번~17번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1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선하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번~4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및 다음 카페에 스트리밍, 다운로드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의 제공한 사안임. 총 25개 게시물임.
(순번 20번 및 35번, 3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감상, 촬영 영상 및 사진 등을 본문에 게시하고 있음. 순번 20번은 가수의 사진 및 풍경 촬영 영상을 편집하여 대중가요를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순번 35번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본

문에 적고 있으며 글과 연관이 있거나 또는 연관이 없는 사진과 대
중가요 여러 곡을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선하 변호사: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음악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불법복
제물에 대한 감상, 분석 등 직접 작성한 글 또는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저작물을 함께 게시하여 나름의 창
작성 구성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불법복
제물의 복제·전송 사안과 달리 불 필요성이 있음.
정리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
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본 사안의 경우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였을 상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선제적으
로 시정권고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바임.
- C 위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 기
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B 위원: 두 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추후 여러 사례들이 모이면 심의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금 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순번 18번~42번은 개인 감상, 촬영 영상 및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8번~42번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선하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3번~53번은 실명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물, 출판물 등을 각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20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43번 내지 53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

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3번~5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선하 변호사: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4번~210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07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54번~210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4번~210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3717호(순번 1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63718호~163733호(순번 2번~17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63734호~163758호(순번 18번~42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63759호~163769호(순번 43번~53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3-163770호~165824호(순번 54번~2108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2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20.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